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3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24.

발 의 자 : 김승수 · 이인선 · 박대수
황보승희 · 이 용 · 지성호
태영호 · 윤창현 · 성일중
정동만 · 홍문표 · 최영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과 사행산업 등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·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(이하 “미환급금등”이라 함)은 동 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되어 국민체육 진흥 등에 사용되고 있음.

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체육 진흥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허용된 사행산업의 한 유형이므로, 해당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금등은 스포츠도박과 같은 불법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,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

도박 문제의 예방·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4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635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4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
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에 귀속되는 금액
이 경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재원은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·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의4(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) ①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 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 제의 예방·치유와 예방치유원 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③ (생략)	제14조의4(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3 항에 따라 사행산업중독예방 치유계정에 귀속되는 금액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재원은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 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 제의 예방·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